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집행잔액 미반납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남구

내 용

광주광역시 남구 ○○○○과에서는 2012. 5. 8.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을 노래하는 ○○○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지역발전 특별회계) 12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3년까지 275,000,000원을 교부받아 2015. 2. 25.까지 269,289,220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0,252,0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10,223,655,060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공사기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계		10,252,000,000	10,223,655,060	28,344,940
○○을 노래하는 ○○○ 조성사업	2012.05.08~2015.02.25.	275,000,000	269,289,220	5,710,780
○○환경개선사업	2005.11.08~2015.12.07.	9,977,000,000	9,954,365,840	22,634,160

※ 광주광역시 남구 제출자료 재구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

유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회계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에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된 보조금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2. 5. 8. 국토교통부로부터 ‘○○을 노래하는 ○○ ○ 조성사업’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275,000,000원을 2015. 2. 25.까지 269,289,22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5,710,780원을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이 완료된 2015. 2. 25.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2017. 9. 29.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잔액 5,710,780원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는 등, [표]와 같이 총

10,252,0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10,223,655,06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28,344,940원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시정]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8,344,940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